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0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이병진
김원이 · 신정훈 · 박수현
이개호 · 정을호 · 문금주
주철현 · 문대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경우 관할 구역에서”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은</u> 지역주민으로 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 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 찰 · 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 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u> <u>의 장</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u> <u>체</u> ----- <u>경우</u> --- ----- ----- -.